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9. 15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| 성 명 | 생년월일 | 주소 | 서류의 명칭 | 서류의 주요내용 | | 송달 불능 사유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----------|
| | | | | 처분사유 |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 |
| 김0근 | 64.10.20. |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(이하 생략) |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|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2회 이상 연속하여 미이행함 - 4차 지정일: 2021.7.21. 미이행 - 5차 지정일: 2021.8.20. 미이행 | 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| 폐문부재 |

4. 공고기간 : 2021. 9. 15. ~ 2021. 10. 13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혜진(Tel. 032-540-577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